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하 "본 개발원")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개발원은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환경·보건·사회복지·교통 등 공공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욕구조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개발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종류) ①자원봉사 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②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③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출판·홍보사업 ④국제교류 및 지역사회 연대증진 ⑤소외계층에 대한 욕구조사 및 지원 사업 ⑥기타 본 개발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개발원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본 개발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각종활동에 참여한 자 중 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② 후원회원은 본 개발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자

제6조(회원가입 및 의무) ① 본 개발원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

회절차를 거쳐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한)①본 개발원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회원은 본 개발원의 프로그램 및 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본 개발원의 활동과 목적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개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 개발원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원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2. 본 개발원의 제반 활동 참가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①본 개발원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②다만, 이사회는 회원으로서의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개발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에 대하여 제명처분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부이사장 1인
3. 원장 1인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부이사장·원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선임의 제한)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총 임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이사(부이사장, 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원장이 상근할 경우에는 그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임여부 및 후임자 선임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본 개발원의 대표이사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원장은 사무국의 총괄책임자로서 본 개발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부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대우)본 개발원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상근할 때에는 법인임금규정에 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16조(고문)①본 개발원의 발전과 이사장의 활동 및 자문에 필요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총회는 이사,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총회는 본 개발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 부이사장, 원장, 이사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본 개발원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 변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회의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의장은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 순으로 한다.

제20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3조(임원의 불신임)①총회는 본 개발원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본 개발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해임안은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총회회의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 및 참석회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의사록을 개발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①이사회는 본 개발원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고문은 초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6조(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임원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4. 개발원 사무국 지휘감독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총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
8.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 순으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이사회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서면결의)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1/3 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의 기록 및 비치는 이 규정 제24조에 준용한다.

제6장 집행기구 및 위원회

제33조(사무국)①본 개발원의 집행기구로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간사 약간 명

③사무국장은 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④사무국장은 원장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⑤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본 개발원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부설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부설기구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인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 사항은 부설기구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실행위원회) ①본 개발원은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 원장, 부설기관 운영위원 1명, 부설기관 소장, 회원 1명으로 구성한 실행위원회를 두며, 법인 사무국장이 그 실무를 맡는다.

②실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
2. 회원자격 심사
3. 직원 상벌
4. 기타 중요사항

제36조(전문위원)본 개발원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후원회)본 개발원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8조(운영규정)실행위원회, 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복무규정, 각 기관운영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원)본 개발원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월 회비 및 연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4. 부대사업 수입급
5. 기타수입금

제40조(회계년도)본 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1조(사업계획과 예산)본 개발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사업실적 및 결산)①본 개발원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 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43조(자산 등) ①본 개발원의 자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본 개발원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편입

제45조(차입금 등)본 개발원의 예산외에 의무부담금이나 당해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정관의 변경)본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제47조(해산 및 합병)①본 개발원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본 개발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8조(시행규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법인의 인장) 본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첨 1〉 과 같다.

위 정관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1996. 5. 1. 정관확정
1997. 3. 7. 정관일부 개정
1999. 4. 13. 정관일부 개정
1999. 6. 23. 정관일부 개정
2000. 4. 24. 정관일부 개정
2008. 7. 8. 정관일부 개정
2009. 8. 25. 정관일부 개정
2014. 2. 17. 정관일부 개정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인)

〈별첨 1〉

본 개발원이 사용하는 인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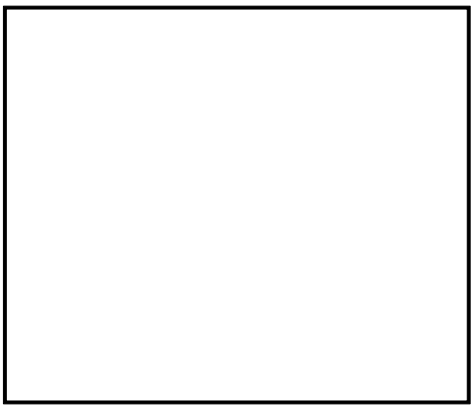

본원의 대표이사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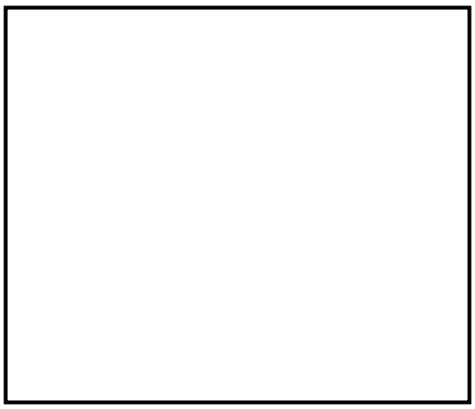

본원의 직인

별 지 】

기 본 재 산 목 록

재산구분	소재지	면적	수량	금액	비고
부동산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47길 13-3(평리동)	대지 198.5㎡, 건축면적 494.12㎡	1	355,000천원	
동산 (전세보증금)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09(평리동)	198㎡	1	15,000천원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6길 29-1(비산동)	79㎡	1	5,000천원	